

### 〈별표84-3〉 중증질환자(뇌·수막의 양성신생물)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

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(뇌·수막의 양성신생물) 산정특례대상질병은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, 2023.1.1. 시행)' 제4조 별표3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) 중 구분1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.

분류항목	분류번호
1. 수막의 양성 신생물	D32
2.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	D33

주) 향후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4조 별표3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) 중 구분1에 해당하는 질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.

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, 이후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.

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,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.

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.